

충청북도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

# 심사보고서

2006. 6. 19.

관광건설위원회

## 1. 심사 경과
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제출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2006년 6월 5일

○ 회부일자 : 2006년 6월 5일

상정일자 : 제25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

○ 2006. 6. 15 : 제2차 관광건설위원회의,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,  
심사의결

## 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문화관광국장 유 광 준)

제안 이유

○ 충청북도 체육시설인 충청북도체육회관 및 충북스포츠훈련관의  
위탁근거를 마련하고, 효율적으로 관리운영을 위한 제반사항을  
규정하는 것임

## □ 주요 내용

- 체육시설(충청북도체육회관 및 충북스포츠훈련관)관리 및 위탁운영 규정을 정함(안 제4조)
- 체육시설 변경·임대 또는 체육시설을 사용·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비용 징수시 도지사 승인 사항을 정함(안 제5조)
- 수탁관리자의 의무와 위탁 운영규정, 해지 등을 정함(안 제6조~제8조)

## 3. 검토보고 요지

### (관광건설전문위원 유인중)

- 기부된 체육시설에 대하여 충청북도체육회에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적절하고 효율적인 시설관리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조례의 제정을 타당하다 사료됨
- 다만, 수탁기관은 특정기관이 될 수 없으므로 안 제4조제1항중 “충청북도체육회(이하“수탁자”라 한다)에”를“충청북도체육회 등(이하“수탁자”라 한다)에”로 하고, 위탁기간과 수탁기간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동조제2항중 “위.수탁 기간은”을 “위탁 기간은”으로 하며, 조문내용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제10조제3항중 “체육회장은”을“수탁자는”으로 함이 바람직하다 사료됨.

- 또한, 기준일을 명확히 하도록, 안 제9조제2항중 “매년 말 결산을 실시하여 다음 연도 2월 말까지”를 “매년 12월31일을 기준으로 결산을 실시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”로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 요지 : 생략

6. 수정안 요지

#### 수정 이유

- 조문 이해의 용이성, 명확성, 통일성을 기함은 물론, 현실 운영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함

#### 수정 주요내용

- 안 제4조제1항중 “충청북도체육회(이하“수탁자”라 한다)에”를 “충청북도체육회 등(이하“수탁자”라 한다)에”로 하고, 동조제2항중 “위.수탁 기간은”을“위탁 기간은”으로 함.
- 안 제9조제2항중 “매년 말 결산을 실시하여 다음 연도 2월 말까지” 를 “매년 12월31일을 기준으로 결산을 실시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”로 함.
- 안 제10조제3항중 “체육회장은”을“수탁자는”으로 함.

7. 심사 결과 : 수정가결

8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10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충청북도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- 충청북도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

# 충청북도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제안연월일 : 2006. 6. 15.

제안자 : 이광종 의원외

## 수정 이유

- 조문 이해의 용이성, 명확성, 통일성을 기함은 물론, 현실 운영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함

## 수정 주요내용

- 안 제4조제1항중 “충청북도체육회(이하“수탁자”라 한다)에”를 “충청북도체육회 등(이하“수탁자”라 한다)에”로 하고, 동조제2항중 “위·수탁 기간은”을“위탁 기간은”으로 함.
- 안 제9조제2항중 “매년 말 결산을 실시하여 다음 연도 2월 말까지”를 “매년 12월31일을 기준으로 결산을 실시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”로 함.
- 안 제10조제3항중 “체육회장은”을“수탁자는”으로 함.

## 충청북도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충청북도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4조제1항중 “충청북도체육회(이하“수탁자”라 한다)에”를  
“충청북도체육회 등(이하“수탁자”라 한다)에”로 하고,  
동조제2항중 “위·수탁 기간은”을“위탁 기간은”으로 한다.

안 제9조제2항중 “매년 말 결산을 실시하여 다음 연도 2월 말까지”를  
“매년 12월31일을 기준으로 결산을 실시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”로  
한다.

안 제10조제3항중 “체육회장은”을“수탁자는”으로 한다.

# 수 정 안 대 비 표

제 정 안	수 정 안
<p>충청북도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</p> <p><b>제4조(관리및위탁운영)</b></p> <p>①충청북도지사(이하 "도지사"라 한다)는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·운영하기 위하여 <u>충청북도체육회(이하 "수탁자"라 한다)에</u> 위탁할 수 있다.</p> <p>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, <u>위·수탁 기간은 3년</u>으로 하되, 필요한 경우 3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</p> <p>③ "생략"</p> <p><b>제9조(회계운영)</b> ① "생략"</p> <p>②수탁자는 체육시설의 회계운영을 함에 있어 「충청북도 재무회계 규칙」을 준용하여야 하며, <u>매년 말 결산을 실시하여 다음 연도 2월 말까지</u>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</p> <p><b>제10조(감독)</b> ① ~② "생략"</p> <p>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도지사는 수탁자에게 관계자의 문책을 요구할 수 있으며 <u>체육회장은</u> 이에 따라야 한다.</p>	<p>충청북도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</p> <p><b>제4조(관리및위탁운영)</b></p> <p>①..... ..... <u>충청북도체육회</u> <u>등(이하 "수탁자"라 한다)에</u> .....</p> <p>②..... ....., ....., <u>위탁 기간은</u>..... .....</p> <p>③ "현행과 같음"</p> <p><b>제9조(회계운영)</b> ① "현행과 같음"</p> <p>②..... ....., <u>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결산을 실시하여</u> <u>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</u> .....</p> <p><b>제10조(감독)</b> ① ~② "생략"</p> <p>③..... ..... <u>수탁자는</u> .....</p>

## 충청북도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도민의 체육진흥을 위하여 건립한 충청북도 체육 시설의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명칭 및 위치) 충청북도 체육시설(이하 “체육시설”이라 한다) 명칭 및 위치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충청북도체육회관 : 청주시 상당구 방서동 38-7번지
2. 충북스포츠훈련관 : 강원도 평창군 도암면 용산리 618번지

제3조(기능) 체육시설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도 단위 체육단체 및 가맹경기단체에 대한 사무실의 제공
2. 동·하계스포츠 종목 경기력 향상을 위한 전지훈련 및 합숙훈련장으로 제공
3. 수익사업을 통한 체육진흥사업비의 조성
4. 기타 도지사가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4조(관리 및 위탁운영) ①충청북도지사(이하“도지사”라 한다)는 체육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·운영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체육회 등(이하 “수탁자”라 한다)에 위탁할 수 있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, 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하되, 필요한 경우 3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③도지사는 체육시설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.

제5조(승인사항)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1. 체육시설을 제3조의 규정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
2. 체육시설을 타인에게 임대하고자 할 경우
3. 체육시설의 사용료 또는 이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경우

제6조(수탁관리자의 의무) ①수탁자는 수탁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.

②수탁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체육시설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시설물 및 장비를 훼손 또는 망실한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 다만,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7조(위탁운영의 해지) 도지사는 수탁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.

1. 체육시설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 또는 용도를 임의로 변경한 때
2. 이 조례의 규정 및 위·수탁 협약을 위반한 때

제8조(사용료의 징수) 수탁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. 다만, 도 단위 체육단체가 공익목적을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.

제9조(회계운영) ①체육시설 관리·운영예산은 특별회계로 운영한다.

②수탁자는 체육시설의 회계운영을 함에 있어 「충청북도 재무회계규칙」을 준용하여야 하며, 매년 12월31일을 기준으로 결산을 실시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10조(감독) ①도지사는 수탁자에게 체육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서류를 조사·검사하게 할 수 있다.

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·조사·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도지사는 수탁자에게 관계자의 문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.

제11조(관계규정의 준용) 체육시설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「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」의 규정을 준용한다.

제12조(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위탁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전에 「충청북도 체육회관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조례」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중인 체육시설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운영중인 체육시설로 본다.

③(다른 조례의 폐지) 「충청북도체육회관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조례」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.

## 관계법령 발췌

### □ 지방자치법

**제15조 (조례)**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**제135조 (공공시설)** ①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.

②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한다.

③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얻어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밖에 설치할 수 있다.

### □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

**제27조 (행정재산등의 관리위탁)**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당해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.

## □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

**제19조 (관리위탁재산의 수탁자격 및 기간)** ①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재산등을 관리위탁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당해 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.

②행정재산등의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. 다만,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5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(각호 생략)

**제20조(수탁재산의 관리)** ①관리재산의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공익목적에 맞게 수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, 수탁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②관리위탁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## □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 조례

**제5조 (공공시설의 위탁관리)** ①도지사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35조 제1항 및 「지방재정법」 제10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시설의 관리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